#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아이수루 의원 발의)

| 의안 번호 | 985 |
|---|---|

발 의 년 월 일 : 2023년 08월 09일
발 의 자 : 아이수루 의원(1명)
찬 성 자 : 김영철, 김용일, 김원중, 김원태, 김춘곤, 김형재, 남창진, 민병주, 박승진, 박영한, 박춘선, 박칠성, 봉양순, 신복자, 유만희, 유정인, 유정희, 윤종복, 이민옥, 이상욱, 이영실, 이용균, 이원형, 이종태, 임종국, 전병주, 한 · 신, 홍국표 의원(28명)

## 1. 제안이유

○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법률 개정에 따라 “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”과 “외국인환자 유치업자” 용어 정의를 변경함(안 제2조의 제3호 및 제4호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#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“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(이하 “의료기관” 이라 한다)” 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.

4. “외국인환자 유치업자(이하 “유치업자” 라 한다)” 란 외국인환자를 시 소재 의료기관에 유치하고자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.

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 라 한다)의 자문을 거쳐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 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## 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2조(정의)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호와 같다. | 제2조(정의)---------- |
| 1. ~ 2. (생략) | 1. ~ 2.(현행과 같음) |
| 3. “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(이하 “의료기관”이라 한다)”이란 시 소재의 의료기관으로서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. | 3. ----------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----------. |
| 4. “외국인환자 유치업자(이하 “유치업자”라 한다)란 외국인환자를 시 소재 의료기관에 유치하고자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. | 4 ---------- 시장에게 ----------. |
| 5. (생략) | 5. (현행과 같음) |
| 제4조(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자문을 거쳐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지 지원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| 제4조(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시장은 ----------. |